배포 즉시 보도 가능하며,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 바랍니다

검찰 PROSECUTION SERVICE

대 검 찰 청

대변인실 전화 02-3480-2100 / 팩스 02-3480-2704

보 도 자 료

2024. 10. 11.(금)

자료문의 : 공공수사기획관실
전화번호 : 02-3480-2310
주책임자 : 공공수사기획관

제 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 수사결과

- 입건 3,101명・기소 1,019명, 당선자 14명 기소 -

○ 검찰은 2024. 4. 10.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공소시효 만료일인 2024. 10. 10.까지 전체 입건인원 3,101명 (구속 13명) 가운데 1,019명을 기소함

○ 2020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비교하여

- 입건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227명) 증가함
- 기소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135명) 감소함
- 기소율은 40.2%에서 32.9%로 7.3%p 감소함

○ 유형별 입건인원은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 1,107명 (35.7%), 금품선거사범 384명 (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 (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 (2.9%) 순임

○ 당선자는 총 152명을 입건하여 그 중 14명을 기소함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입건인원 (149명 → 152명)은 증가하였으나, 기소인원 (27명 → 14명)과 기소율 (18.1% → 9.2%)은 모두 감소함

○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 기간 내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임

1 입건·처리 현황

(기준 : 공소시효 만료일)

구분	입건 (구속)	처리			수사 중
		소 계	기소 (기소율)	불기소	
제22대 총선	3,101명 (13명)	3,087명	1,019명 (32.9%)	2,068명	14명
제21대 총선	2,874명 (36명)	2,852명	1,154명 (40.2%)	1,698명	22명
제20대 총선	3,176명 (114명)	3,176명	1,430명 (45.0%)	1,746명	0명

※ 수사 중 사건은 ▲공범 기소 ▲ 공무원의 직무 관련 또는 지위 이용 선거범죄 ▲정치자금법위반 등 공직선거법 이외 선거 관련 범죄로 단기 공소시효 미적용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 선거사범 전체 입건인원은 7.9% (2,874명 → 3,101명) 증가함

- 기소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135명) 감소하였고, 기소율은 7.3%p (40.2% → 32.9%), 구속인원은 63.9% (36명 → 13명) 감소함

※ ▲각 정당 사이의 경쟁 심화로 인한 후보자 간 선관위 신고, 고소·고발 증가 ▲'20. 12. 29.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나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허용 등의 영향으로 입건인원은 다소 증가하고, 기소율은 다소 감소

2 범죄유형별 발생(입건) 현황

구분	합계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금품선거	선거폭력·방해	공무원·단체	기타
제22대	3,101명	1,107명 (35.7%)	384명 (12.4%)	364명 (11.7%)	90명 (2.9%)	1,156명 (37.3%)
제21대	2,874명	818명 (28.5%)	492명 (17.1%)	244명 (8.5%)	70명 (2.4%)	1,250명 (43.5%)
제20대	3,176명	1,150명 (36.2%)	656명 (20.6%)	111명 (3.5%)	139명 (4.4%)	1,120명 (35.3%)
제19대	2,544명	655명 (25.7%)	828명 (32.6%)	77명 (3.0%)	87명 (3.4%)	897명 (35.3%)

○ 유형별 입건인원은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 1,107명 (35.7%), 금품선거사범 384명 (12.4%), 선거폭력·방해사범 364명 (11.7%) 순임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사범 (818명 → 1,107명), 선거폭력·방해사범 (244명 → 364명) 증가, 금품선거사범 (492명 → 384명) 감소

3 수사단서별 현황

구분	고소·고발 사건					인지 사건		
	합계	선관위	후보자	정당	제3자	합계	경찰	검찰
제22대	2,374명	659명 (27.8%)	466명 (19.6%)	112명 (4.7%)	1,137명 (47.9%)	727명	684명 (94.1%)	43명 (5.9%)
제21대	2,074명	541명 (26.1%)	349명 (16.8%)	124명 (6.0%)	1,060명 (51.1%)	800명	632명 (79.0%)	168명 (21.0%)
제20대	2,135명	448명 (21.0%)	404명 (18.9%)	147명 (6.9%)	1,136명 (53.2%)	1,041명	665명 (63.9%)	376명 (36.1%)
제19대	1,428명	496명 (34.7%)	288명 (20.2%)	39명 (2.7%)	605명 (42.4%)	1,116명	681명 (61.0%)	435명 (39.0%)

○ 고소·고발에 의한 입건인원은 2,374명 (전체 입건자의 76.6%)으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2,074명, 전체 입건자의 72.2%) 대비 다소 증가함

- 검사의 직접수사개시가 제한됨에 따라 검찰에서 직접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한 인원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급감하였음 (168명 → 43명)

※ 검사 직접수사개시 가능 범위 : 금품선거,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경찰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 등

4 후보자·당선자 등 기소 현황

○ 정당별 후보자 (당선자 포함, 예비후보자 제외) 입건·처리 현황

(기준 : 공소시효 만료일)

소속 정당	입건	기소		불기소	수사중
		당선자	낙선자		
더불어민주당	126명	10명	7명	107명	2명
국민의힘	100명	4명	12명	82명	2명
조국혁신당	6명	0명	0명	6명	0명
개혁신당	6명	0명	4명	2명	0명
진보당	3명	0명	1명	2명	0명
기본소득당	1명	0명	0명	1명	0명
무소속	12명	0명	7명	5명	0명
기타	16명	0명	7명	9명	0명
합 계	270명	14명	38명	214명	4명

○ **당선자는 152명을 입건하여, 그 중 14명 기소**

- 기소된 14명의 주된 범죄에 따른 범죄유형은 다음과 같음

합계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금품선거	경선운동 방법위반	여론조사 공표금지	여론조사 거짓응답	확성장치 사용	호별방문
14명	6명	3명	1명	1명	1명	1명	1명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입건인원(149명 → 152명)은 증가하였으나, 기소인원(27명 → 14명)과 기소율(18.1% → 9.2%)은 모두 감소함

※ 당선자 중 4명은 계속 수사 중(공범을 기소하여 공소시효 정지)

○ 당선자의 당선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범한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등 9명 기소(선거사무장 4명, 회계책임자 5명)

5 제22대 총선 선거사범 특징

가.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사건의 증가

○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되고, 유튜브, SNS 등 **정보전달 매체가 다변화**됨과 더불어 **특정 정치인 또는 정치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팬덤정치** 현상도 강화

○ 이러한 정치상황 속에서 **지지자 또는 구독자 확보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편향적인 내용**의 가짜뉴스, 가짜정보를 생성·유포하는 행위 증가

○ 또한, 언론보도만을 근거로 하거나 단순한 의혹제기 성격의 일반인 고소·고발도 증가하여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사범 입건인원 증가** (21대 818명 → 22대 1,107명)

나. 선거폭력·방해 사건의 급증

○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상대 정당 후보자 또는 지지자를 혐오하는 현상이 강해져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등의 **선거폭력·방해사범 입건인원 급증**(21대 244명 → 22대 364명)

○ 선거관리에 대한 불신과 음모론이 확산되면서 선거관리 감시 명목으로 **사전투표소 내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신종범죄**도 등장

다. 금품선거 사건의 감소

○ 유권자들의 **금품선거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과 기부행위 상대방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 부과 등에 따라 **금품선거사범 입건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21대 492명 → 22대 384명)

○ 다만, 당내경선이 치열해짐에 따라 **당내경선과 관련한 금품제공사범 입건인원**은 다소 증가 (21대 3명 → 22대 10명)

< 선거사건 협력절차 시행 >

◆ '21. 1.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 후 실시된 대통령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시점에 선거사건이 대거 송치·송부**되어, 시효에 쫓겨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은 물론 직접 보완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수사가 종결되는 문제점** 노출

-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검·경이 필수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도록 개정된 수사준칙이 시행('23. 11. 1.)되어 **제22대 총선에 최초로 선거사건에 대한 필수 협력절차 진행**

◆ 개정 수사준칙에 따라 제22대 총선 관련하여 **총 970여건의** 검·경 **선거사건 협력절차가 진행**

- 중요사건 등에서 검·경의 원활한 협의를 통하여 보다 면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 확인

◆ 단기 공소시효에 따른 수사기간 부족은 여전한 문제

- 인터넷, SNS 등 온라인을 통한 범죄 증가, 압수수색 등 수사절차에 관계자 참여권 보장 강화, 정보의 전자화에 따른 디지털 자료 분석 필요성 증대, 수사권 조정에 따라 복잡해진 수사절차 등으로 필수적인 수사기간이 길어져 **단기 공소시효 완료에 임박하여 처리되는 사건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 (시효완성 15일 전 처리율이 63.9%)

- 선거사건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실질적인 수사기간 확보를 위하여 **현행 6개월인 초단기 공소시효에 대한 개선 필요**

⑥ 향후 계획

○ **수사검사 직관 등 철저한 공소수행**

- 중요사건은 원칙적으로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 철저

-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기간** (1심 6개월, 2심·3심 3개월) **내 재판이 종료**될 수 있도록 법원과 긴밀하게 협의

○ **공소시효 정지된 선거범죄 등을 철저하게 수사**

- 공범 기소로 공소시효가 정지되거나 공무원 직무 관련 선거범죄 등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단기 공소시효('24. 10. 10.) 이후에도 **계속 수사하여 실체를 규명**할 예정

○ **재보궐선거 등 향후 선거도 철저히 대비**

- **'24. 10. 16. 재보궐선거** 등 향후 예정된 주요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검찰의 역량을 집중**

※ 주요 수사 사례 별첨

[별첨]

주요 수사 사례

허위사실유포・흑색선전

□ A(공천취소)는 언론을 통해 지역 사업가로부터 돈봉투를 수령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돈봉투를 거절한 적이 없음에도 '바로 그 자리에서 봉투를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기자회견 **[허위사실공표]**

※ '24. 10. 7. 불구속기소 (청주지검)

□ B(당선자)는 후보자 재산신고 시 예술품 수량과 가액을 축소 신고하고, 예술품 매매로 인해 신고 재산이 늘었음에도 '기존 예술품 가액상승으로 재산이 증가되었다'는 취지로 허위 기자회견문 배포 **[허위사실공표]**

※ '24. 10. 7. 불구속기소 (수원지검)

□ C(기자) 등 2명은 유튜브를 통해 '후보자가 대기업으로부터 민원이나 청탁을 받고 태양광사업이 가능하도록 국회에서 발언하고, 대기업에 청탁하여 사촌동생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 **[허위사실공표]**

※ '24. 10. 8. 2명 불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 D(낙선자) 등 4명은 연설차량 등에서 '상대 후보가 과거 교제 중인 유부남을 상대로 이혼하라고 협박하고, 유부남의 배우자를 상대로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 등 **[허위사실공표]**

※ '24. 10. 8. 4명 불구속기소 (안양지청)

선거관련 금품수수

□ E(기자)는 정당 관계자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후보자로 단독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3회에 걸쳐 합계 1억 200만원 수수 **[후보자추천관련금품수수]**

※ '24. 5. 10.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 '24. 9. 13. 1심 징역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 F(선거사무원) 등 4명은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식당에서 선거구민 42명에게 18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며 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 '24. 8.~10. 1명 구속기소 및 3명 불구속기소(진주지청)

□ G(당선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당내경선 관련한 지지호소 문자메시지 50,000여건을 발송하고, 문자발송 담당자 등에게 2,500여만원 지급 **[매수및이해유도 등]**

※ '24. 10. 2. 1명 구속기소 및 13명 불구속기소(광주지검)

□ H(선거연락소장) 등 3명은 선거운동원 34명에게 30만원씩 합계 1,020만원 및 유류비 250여만원 지급 **[매수및이해유도 등]**

※ '24. 10. 8. 1명 구속기소 및 2명 불구속기소(창원지검)

선거폭력·방해

□ I(일반인)는 정당 대표의 목을 칼(총길이 18cm, 칼날길이 13cm)로 찔러 살해 시도 **[선거자유방해, 살인미수]**

※ '24. 1. 29. 구속기소(부산지검) → '24. 7. 5. 1심 징역 15년 선고(부산지법)

□ J(대학생)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길이 15cm, 칼날길이 6cm)로 명함을 배부 중인 선거사무장의 몸을 찌를 듯이 협박 **[선거자유방해, 특수협박]**

※ '24. 5. 29. 불구속기소(고양지청)

□ K(가수)는 양손으로 선거운동 중인 선거사무원의 몸을 밀어 폭행하고, 선거운동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방해 **[선거자유방해]**

※ '24. 9. 12. 불구속기소(서울북부지검)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

□ L(시장)은 지역 축제 행사장에서 후보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다수의 선거인들을 상대로 '내년 4월에 표 좀 많이 보내달라'는 취지로 발언하는 등 선거운동 **[공무원의선거관여금지위반 등]**

※ '24. 8. 16. 불구속기소(통영지청)

□ M(시장 비서) 등 2명은 후보자의 업적을 반박하게 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내부 문서인 특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자료를 상대 후보자에게 제공 **[공무원의선거관여금지위반]**

※ ’24. 9. 27. 2명 불구속기소(평택지청)

□ N(회사 대표) 등 2명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조직적으로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선거운동 출정식, 유세장 등에 참석하도록 지시한 후 식사비 등 비용을 보전하여 줌 **[특수지위이용선거운동 등]**

※ ’24. 10. 4. 2명 불구속기소(평택지청)

기타 사건

□ O(유튜버) 등 4명은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사전투표소·개표소로 사용되는 행정복지센터 등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 설치 **[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등]**

※ ’24. 4. 23. 1명 구속기소(인천지검) → ’24. 10. 1.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인천지법)

※ ’24. 4.~7. 2명 구속기소 및 1명 불구속기소(울산지검)

□ P(선거사무장)는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차명 휴대전화 91대를 동원하여 경선 여론조사에 중복하여 응답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가로 1,500만원 지급 **[여론조사중복응답 등]**

※ '24. 8.~10. 2명 구속기소 및 3명 불구속기소(서울북부지검)

□ Q(당선자)는 총 6,400여명의 책임당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육성 녹음파일을 ARS 방식으로 발송 **[경선운동방법위반]**

※ '24. 10. 8. 불구속기소(김천지청)